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98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5.27
-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 5.30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김진만)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1,489억원을 편성하여 101건, 582억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551억원을 지출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총 1,250억원이며, 이 중 90건 51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487억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1건) 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으로 도시계획사업 관련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133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42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39억원을 편성하여, 11건, 64억원을 지출결정하고, 64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아리수 생산 재료비 전기요금 인상분 지급 32억원, 성산대교와 한강대교 공사 관련 소송 판결금 지급 8억원 등 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조 4,900억 4,8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 보다 $\Delta 3.7\%$, $\Delta 1$ 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100만원은 당초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 간주처리분(1,482억 3,300만원), 추경 증액 조정분(3조 372억 3,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1조 1,140억 6,600만원을 합한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보다 $\Delta 3.7\%$, $\Delta 1$ 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51조 4,900억 4,8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Delta 8.6\%$, $\Delta 4$ 조 8,131억 2,800만원 감소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조 2,152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5,432억 8,5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0조 2,765억 8,700만원)보다 $\Delta 5.6\%$, $\Delta 2$ 조 8,161억 3,200만원 감소한 47조 4,60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조 9,2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5,319억 8,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조 2,950억 9,500만원) 보다 $\Delta 1$ 조 9,969억 9,700만원 감소한 3조 2,980억 9,8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3	총계	51,490,048 <2023최종> 50,375,981 <2022→2023이월> 1,114,066	50,758,554 (98.6%)	47,460,455 (92.2%)	3,298,098 (6.4%)	명 시 이 월 ^{주1)} 641,198 사 고 이 월 860,581 건설개량이월 ^{주1)} 32,902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17,424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1,645,991
	일반회계	38,319,642 <2023최종> 36,232,230 <2022→2023이월> 275,161	36,215,268 (99.2%)	34,928,472 (95.7%)	1,286,796 (3.5%)	명 시 이 월 ^{주1)} 42,345 사 고 이 월 213,859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97,913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932,676
	특별회계	14,982,655 <2022최종> 14,256,679 <2021→2022이월> 892,477	14,543,285 (97.1%)	12,531,982 (83.6%)	2,011,302 (13.4%)	명 시 이 월 ^{주1)} 598,853 사 고 이 월 646,721 건설개량이월 ^{주1)} 32,902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9,510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713,314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나. 예비비 결산 개요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1,488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582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5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가)-(나)-(다)
합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반회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별회계 ^{주1)}	23,870	6,416	6,416	-	0 ^{주2)}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은 34,000원임

다.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2억 7,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7,847억 5,800만원임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5,317억 8,200만원, 지출은 6조 4,906억 8,3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3.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와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관련 법령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제한(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과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23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의 경우, 본예산에 1,08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3년 5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1,050억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예비비

24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6억 1,700만원을 감액한 238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표 3-3〉 2023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최종예산
총 계	152,610	△3,739	148,871
일반회계	128,122	△3,121	125,001
일반예비비	108,122	△3,121	105,001
목적예비비	20,000	-	20,000
특별회계	24,487	△617	23,870
기타특별회계	14,320	△617	13,702
공기업특별회계	10,167	-	10,167

- '23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1,488억 7,100만원으로 이 중 582억 900만원(101건)을 지출결정하여 551억 1,100만원(91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1,281억 2,200만원중 41.4%, 517억 9,200만원(90건)을 지출결정하고, 486억 9,400만원(80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회계 예비비중 일반 예비비는 474억 4,200만원(41건)을 지출결정하여 444억 1,100만원(31건)을 지출하였으며, 목적 예비비는 43억 5,000만원(49건)을 지출결정하여 42억 8,300만원(49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건, 13억 2,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에서는 1건, 5억 1,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건, 38억 8,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건, 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표 3-4〉 예비비 지출 현황 ('23회계연도~'21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주1)} (가-나-다)
2023	소 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반회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별회계	23,870	6,416	6,416	-	0.0 ^{주2)}
2022	소 계	168,804	81,621	79,428	445	1,748
	일반회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특별회계	21,733	10,626	10,078	432	115
2021	소 계	167,693	93,814	90,771	-	3,042
	일반회계	150,946	89,777	86,767	-	3,010
	특별회계	16,747	4,036	4,003	-	32

※ 주1) 지출잔액은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732억 800만원(1,250억 100만원 - 517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됨

주2) '2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은 34,000원임

○ 관련 법령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의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중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표 3-5A〉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7,44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123	
종합 사회 복지 관 운영	57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인 종합 복지 관 운영	4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시 니 어 클럽 운영 지원	5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발 달 장애 인 평생 교육 센터 운영	7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뇌 병 변 장애 인 비 전 센터 운영	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체 육 시 설 운영	1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복지 관 운영	316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영	18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3,431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원	598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800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	침수 위험지역 방지시설 설치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900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 관리 (자체)	900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 회 복지 사 업 보 조	241	
노 인 종합 복지 관 운영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체 육 시 설 운영	5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일 시 보 호 시 설 운영	2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자 활 시 설 운영	108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재 활 시 설 운영 (전 환 사 업)	4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요 양 시 설 운영 (전 환 사 업)	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표 3-5B〉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통계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7,447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1,281	
아 동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450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0.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지원	16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2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공 동 생 활 가 정 운 영	9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단 기 거 주 시 설 운 영	5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19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운 영	1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3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주 간 보 호 시 설 운 영	86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요 양 시 설 운 영 보 조 (국 비)	2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재 활 시 설 운 영 보 조	10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질 환 자 지 역 사 회 전 환 시 설 운 영	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1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 관련 법령은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도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실정법상 제약”으로 긴급재해대책 성격일 때에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더욱이 관련 법령은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하고 있어 지난 '23년 1~2월에 있었던 겨울철 한파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표 3-6〉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의 지출제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다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중 ①복지정책실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34억 3,100만원)와 ②주택정책실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5억 9,800만원)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를 예비비 지출을 통해 확보한 사례로 검토되는 바,

-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기 앞서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내재적 제약”에 따라 이용·전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 및 예비비 관리부서는 동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①**장애인활동 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는 지난 '23년 6월에 변경 내시되었으며, ②**주거급여수급자 지원**는 지난 '23년 9월에 변경 내시되어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시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예산과목이 “보조금”인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편의성 등을 우선시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고려하여 추경 등 보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23회계연도중 지출된 예비비 집행사례를 검토하면 재무국은 지난 '23년 1월 5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①**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5억 6,400만원) ②**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2억 3,000만원)에 대해 예비비 7억 9,500만원을 지출요구한 바,

- 예산부서는 1월 9일, 재산관리과가 지출요구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하였고 사업부서는 1월 11일, 지출계획한 예비비 7억 9,5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재무국 재산관리과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요구일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564	564	-	'23. 1. 5	'23. 1. 9	'23. 1.11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230	230	-	'23. 1. 5	'23. 1. 9	'23. 1.11

- 사업부서는 소요예산 추계시 '23년도 예산안 제출시점('22.11. 1) 직전에 발표된 COFIX가 3.4%('22.10.17 기준)임에 따라 '23년도 소요예산 추계시 일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3.6%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 이후 분할납부 시점('23년 1월)에 적용될 실제 금리가 4.34%로 발표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보다 0.76%p 증가됨에 따라, 분할납부 대금부족 사유가 발생하였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하게 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이자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에 COFIX를 발표하고 있어, '23년도 1월에 적용될 COFIX는 지난 '22년 12월 15일에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이 임박한 시기라 하여도 '23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경정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로서는 본예산의 의결 일정이 임박하여 '22년 12월에 고시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나, COFIX는 '22년 11월에도 3.98%로 발표되어 이미 예산안 제출시 예상한 금리(3.6%)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되었다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거나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시 예비비를 지출하여 소요예산 산출의 미흡함을 회석하기 보다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표 3-8〉 COFIX 통계

(단위 : %)

공시일	대상월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2023/02/15	2023/01	3.82	3.63	3.02
2023/01/16	2023/12	4.29	3.52	2.92
2022/12/15	2022/11	4.34	3.19	2.65
2022/11/15	2022/10	3.98	2.85	2.36
2022/10/17	2022/09	3.40	2.52	2.04

- 상수도사업본부(現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 생산재료비** 사업 추진중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요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지난 '23년 10월 25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32억 1,700만원을 사용 요청하였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부서는 12월 11일, 기전설비과가 사용 요청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하여 12월 15일, 승인된 예비비(32억 1,7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아리수 생산재료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동 력 비	3,217	3,217	-	-	'23.12.11	'23.12.15

- 예비비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출한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서울시 수도물인 아리수를 생산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1,62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85억 3,500만원)과 예비비(32억 1,7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95억원으로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9%, 35억 7,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의 세출과목중 **동력비**의 경우에는 당초 본 예산에 67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예비비(32억 1,700만원), 전용(46억원)을 통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49억 9,60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규모보다 11.6%, 78억 1,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의 예비비 지출 및 전용 사유에 대해 연중 3회 인상된 전기요금을 주요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23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고시한 시기는 '22년 12월('23. 1. 시행), '23년 5월('23. 5.16 시행), '23년 11월('23. 11. 9 시행)로 확인되는 바,
 -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시점('23. 5.30)전에 이미 2회의 전기요금 인상이 시행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충당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추경을 통해 추가소요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력비**뿐만 아니라 **일반재료비**, **약품비** 경우에도 부족한 재원을 전용, 변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여유재원은 타 사업으로 변경해준 사례가 있어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인 변경·전용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증·감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0〉 2023회계연도 아리수 생산재료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주1)}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62,231	179,500	175,625	304	3,571
일반재료비	20,503	31,634 ^{주2)}	30,636	304	693
약품비	13,276	11,597 ^{주3)}	10,696	-	900
원수구입비	55,192	55,192	54,249	-	942
수선유지비	6,081	6,081	5,105	-	975
동력비	67,179	74,996 ^{주4)}	74,937	-	58

주1)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증·감액을 반영한 것

주2) 일반재료비 예산현액 316억 3,400만원은 예산액(205억 300만원), 이월액(85억 3,500만원), 전용(9억 5,100만원), 변경(16억 4,500원)임

주3) 약품비 예산현액 115억 9,700만원은 예산액(132억 7,600만원), 변경(△16억 7,900만원)임

주4) 동력비 예산현액 749억 9,600만원은 예산액(671억 7,900만원), 예비비지출(32억 1,700만원), 전용(46억원)임

- 특히, 지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등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바,

- 사업부서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부서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된 부족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편의적 대안을 선호한 결과로 사료되어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관리하는 예산부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미래청년기획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대해 서울시 관내 대학교에도 '23년도 1학기분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출하고자 지난 '23년 5월 22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2억 5,300만원을 사용 요청하였으며

- 예산부서는 5월 24일, 미래청년기획단이 지출요구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하였고 사업부서는 7월 27일, 지출계획한 예비비 2억 5,3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1〉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사 무 관 리 비	253	253	-	-	'23. 5.24	'23. 7.27

- 서울시는 지난 '23년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이미 참여중인 5개 대학교외에 다른 대학도 추가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정부지원금(1,000원), 학생부담금(1,000원)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대학교 부담금이 서울 소재 대학교의 정책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하여 서울시가 “1식(食)당 1,000원”을 부담하여 대학과 학생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임
-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사업홍보로 서울 소재 참여 대학교가 26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23년도 1학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수요에 따라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다만,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당초 농정원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용승인된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전 시행된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 용역방식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받아 수의계약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난 '23년 6월, 전용방침을 수립하여 예비비로 확보한 재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23년 7월 27일에 '23년도 1학기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2억 5,3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2〉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승인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무관리비	253	△253	-	'23. 6.29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53	

- 예비비가 지출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6개 대학교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 '23년 5월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할 당시에는 **사무관리비**로 지출결정하고, 예비비를 지출 직전에서만 다른 세출과목으로 전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고민보다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여 예비비를 요청한 사례로 판단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도 동 예비비 지출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23년 7월 27일에서야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23년도 추경예산의 의결일자가 '23년 7월 5일임을 고려하면 추경예산의 사업에 포함하여 의회로부터 심사·의결을 받은 이후 집행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였던 결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이나 주체 등에 대한 고민보다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여 예비비를 통해 지출 계획하고, 지출 계획한 예비비는 통계목의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결국, 지출시기도 서울시 제1회 추경이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목적에 집중하여 방법과 비합리적 선택이 발생하는 절차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잔여일정을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숙박, 식사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 등의 재원은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안내된 바,
 -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예비비를 활용하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본부·국에서 잼버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계획한 것임
 - 폭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생된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잼버리 지원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결정은 예비비의 지출범위내로 사료되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잼버리와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9개 세부사업은 실제 예비비를 지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한류관광 활성화**를 제외한 8개 예비비 지출건은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 요구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예비비 요구액
소 계				1,407
1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식비, 물품구입비, 대체시설 숙박비 등)	941
2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잼버리) (박물관 야간 개장 프로그램 지원)	16
3		서울공예박물관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잼버리) (박물관 야간 개장 프로그램 지원)	16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한류 관광 활성화 (잼버리) (한류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	51
5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잼버리) (케이팝과 태권도 연계 공연 제공)	36
6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잼버리)	17
7	푸른도시여가국	서부공원여가센터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행사장 주차장 사용료)	12
8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한강문화관광과)	한강 사계절 축제 (잼버리) (한강페스티벌 공연 및 수영장 야간 개장)	294
9		기획예산과 (환경수질과)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잼버리) (화장실 추가 설치 운영)	22

- 예비비는 지출결정되면 지출사유가 해소되어도 예비비로 되돌릴 수 없는 바, 지출결정된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회계연도중 긴급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면 이미 지출결정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어 사실상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원이라 할 지라도 단 1원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요청과 지출결정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예비비 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소 계	1,407	0.06 ^{주1)}	-	1,407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941	-	-	941
박물관 유지 운영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16	-	-	16
박물관 운영 및 시설 관리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16	-	-	16
한류관광 활성화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51	0.06 ^{주1)}	-	51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36	-	-	36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17	-	-	17
월드컵 공원 유지 관리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12	-	-	12
한강사계절 축제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294	-	-	294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22	-	-	22

주1) 한류관광 활성화, 65,800원 지출

○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는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세부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세부사업 기준 5건, 10억 3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15〉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본예산 삭감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소 계			1,003	1,003
뇌 병 변 장 애 인 비 전 센 터 운 영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0	3	3
장 애 인 복 지 관 운 영	민 간 위 탁 금	△113	73	73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898	316	316
거 리 노 속 인 보 호	민 간 위 탁 금	- ^{주1)}	30	30
정 신 재 활 시 설 운 영 보 조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200 ^{주2)}	105	105
성 산 대 교 성 능 개 선	배 상 금 등	- ^{주3)}	475	475

주1) 거리노숙인 보호는 본예산 심사시 민간위탁사업비를 △1억원 감액하였음

주2)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본예산 심사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원을 감액하였음

주3)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본예산 심사시

- 복지정책실 소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시민건강국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해 난방비를 예비비를 통해 지원한 사례임
- 동 사업들의 본예산 삭감내역을 검토한 결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은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감액조정 하였

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립 및 구립, 법인 복지관의 인건비중 여유분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 **거리노숙인 보호**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동형 목욕차량 구매비를 감액조정 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정신건강통합센터 프로그램비를 일부 조정하고, 정신재활시설 인건비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재난안전실 소관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본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은 동 사업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조정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시급성 등이 고려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에도 관련 법령 및 기준 위반 결과일 수밖에 없어 동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향후 법령 및 기준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예비비 지출 제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6〉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주1)}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주3)}
합	계 ^{주2)}	58,209	(100.0)	55,111	2,924	91
	재난안전관리실	21,077	(36.2)	21,077	0 ^{주4)}	4
	복지정책실	11,157	(19.2)	10,316	840	39
	도시교통실	6,964	(12.0)	6,964	0 ^{주4)}	2
	시민건강국	6,079	(10.4)	5,403	676	18
	서울아리수본부	3,881	(6.7)	3,881	0 ^{주4)}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10	(3.5)	2,010	0 ^{주4)}	5
	물순환안전국	1,500	(2.6)	1,500	-	3
	기획조정실	941	(1.6)	-	941	-
	여성가족정책실	797	(1.4)	797	-	6
	재무국	795	(1.4)	795	0 ^{주4)}	2
	주택정책실	598	(1.0)	598	-	1
	소방재난본부	511	(0.9)	511	-	1
	자치경찰위원회	500	(0.9)	499	0 ^{주4)}	1
	균형발전본부	490	(0.8)	490	0 ^{주4)}	2
	미래한강본부	316	(0.5)	-	316	-
	미래청년기획단	253	(0.4)	253	-	1
	문화본부	206	(0.4)	-	33	-
	관광체육국	87	(0.2)	0.06	87	1
	행정국	28	(0.04)	11	17	1
	푸른도시여가국	12	(0.02)	-	12	-

주1) 지출결정액 규모순

주2)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에 따라 “계”와 “실본부국별 집행잔액”간 차이 있음

주3)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통계목 기준)

주4)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실 32,000원, 도시교통실 1,000원, 서울아리수본부 2,000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4만 5,000원, 재무국 1,000원, 자치경찰위원회 113,000원, 균형발전본부 1,000원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 (2024. 6.24)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1898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488억 7,100만 원 중 582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51억 1,2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250억 100만원
- 지출결정액	517억 9,300만원
- 지출액	486억 9,500만원
- 이월액	1억 7,30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9억 2,5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1억 6,700만원
- 지출결정액	45억 8,100만원
- 지출액	45억 8,1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37억 300만원
- 지출결정액	18억 3,500만원
- 지출액	18억 3,5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